
보정동 통장협의회 5월 정기회의 자료

보 정 동

●●● 목 차 ●●●

《시정 홍보》

1.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1
2.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2
3. 2026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박람회 홍보 3
4.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4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어 안내하오니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5.12.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13.부터 신고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2026년 6월 3일 수요일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 2026. 5.13.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문의 :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 031-6193-6772]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 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6. 5. 29.~ 5. 30.) 또는 투표일(2026. 6. 3.)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용인시 거주 거동불편 선거인에게서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을 보내드립니다.

3.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 접수처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2-1390

※ 신청기간이 지난 후 및 선거일 당일에는 신청인이 용인도시공사 콜센터 ☎031-526-7755에 직접 문의·신청(단, 예약차량 우선 배차이므로 차량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되도록 기간 내에 신청)

4. 신청기간

○ 사 전 투 표 : 2026. 5. 11.(월) ~ 5. 25.(월)까지

○ 선 거 일 투 표 : 2026. 5. 11.(월) ~ 5. 30.(토)까지

5.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사전)투표소 등

※ 문의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2-1390]

용인특례시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오니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

2026. 5. 13.(수) 14시~17시

용인미르스타디움

2층 데크광장 및 시설물 내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용인시일자리센터
키키오톡 채널



채용관

구인업체 50개사, 당일 현장면접

유관기관

일자리 유관기관 사업소개 및 취업상담

부대행사

이력서 사진촬영, 진로성향검사, 지문 인적성 검사, 퍼스널컬러 진단, 면접 메이크업, 지게차 VR체험, 아로마 핸드 마사지, 심폐소생술 교육 등

※ 문의 : 용인시일자리센터 [☎ 031-289-2262~2269]

용인특례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주민불편 해결 및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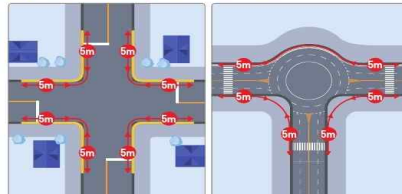
인도

1 소화전 반경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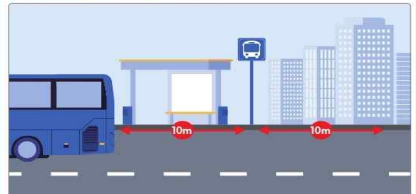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교차로모퉁이 5m(회전교차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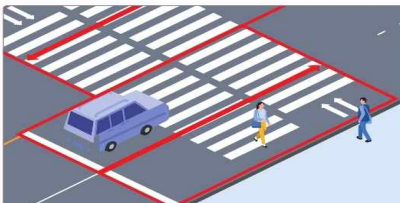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3 버스 정류소 10m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정지상태 차량

7 기타지점(상기 1~6지점 이외에 도로교통법상 금지구역 중 지자체별로 정한 지점)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행정 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주세요
-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 문의 : 기응구성 교통과 (☎ 031-6193-6389)